

물리학과 선거 시행세칙

제 1장 선거시행세칙의 원칙

- 가. 물리학과 학생회 선거를 민주주의 구현의 장으로 만들어간다.
- 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 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과도한 경쟁을 조절한다.
- 라. 세칙은 선관위에서 제시한 시행세칙 안이 후보 등록된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의 합의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며(시행세칙협의모임), 각 선본의 선거운동원들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마. 본 시행세칙에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의, 경고조치 등 그에 합당한 제재가 주어지게 된다.

제2장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 가. 선거일 당일 현재 재학 중으로 확인된 이과대학 물리학과 재학생은 선거권을 갖는다.
- 나. 휴학 중인 이과대학 물리학과 재학생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시기에 유권자 등록을 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유권자 등록을 한 휴학생까지 합쳐 투표율을 계산한다
<개정 17.09.23>

제3장 입후보자 자격 및 구비서류

제1조 입후보자 자격

- 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소속 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재학하거나 재학중인 자
- 나. 물리학과 학부 재학생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2조 출마형태 정후보(1인)와 부후보(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형태로 한한다.

제3조 입후보자 구비서류와 규제사항

- 가. 추천인 연서
- 나. 후보의 사진과 공약이 포함된 자보
- 다. 규제사항
 - 1) 위의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을 받지 않는다.
 - 2) 마감시간 (18시)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는다.
 - 3) 선관위의 실수로 미자격 후보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21시까지 통보하여 미비서류를 완비하여 다음날 18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물리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제1조 구성

- 가. 물리학과 선관위원장은 1인으로 물리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나. 물리학과 선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학부생(선거 당해 기준)중에서 물리학과 선관위원장이 임명한다.
 - 다. 실무와 관련하여 집행부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 <개정 17.09.23>

제2조 역할

- 가. 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결이 필요할 경우 의결방식은 전원 참석에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다.
- 나.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가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 일정을 홍보 및 선전 한다.
- 다. 상대방이나 특정 선본을 비방하거나 토론문화를 해치는 행동에 대해 선관위는 제재할 수 있다.
- 라. 최소 선거 1주일 전에 선거일정을 공고한다.
- 마. 선관위는 투.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용지 및 투표함 제작, 투표소 설치, 투표함 관리, 개표진행)
- 바. 선관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은 이과대 선관위로 이월하여 결정한다.
- 1) 후보 자격 박탈 2) 선거 무효 3) 선거 일정 재조정 4) 기타 중요한 사항
- 사.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물리학과 선본은 직접 이과대 선관위에 제소할 수 없다. 불복의 경우 물리학과 선본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소의 권한은 선관위가 갖는다.

제5장 참관인

제1조 자격

- 가. 각 후보자는 투표소 당 1인의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선거 당시 재적생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참관인은 현 물리학과 운영위원이나 물리학과 선거본부 구성원이 할 수 있다.

제2조 역할

- 가.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감독, 참관한다.
- 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의를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 다. 각 선본 협의 하에 투표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규제조건

- 가. 참관인은 참관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나. 참관인이 참관 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 물리학과 선관위원장과 다른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할 시에 각 후보 선거 본부의 합의를 거쳐 물리학과 선관위원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다.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2.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선전하는 언동이나 물품을 소지한 경우)

제4조 기타사항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물리학과 선관위원장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선거운동

제1조 정의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제2조 구성 선거 운동은 강의실 유세,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후보들의 사람 만나기, 학내의 각 모임과 단체 방문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기간과 공간

가. 후보들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관위에 의해 결정된다.

나. 공간선거운동은 학내에서만 가능하며, 선본 옷을 입는 행위 역시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다. 기간과 공간을 어길 경우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 조치한다.

제4조 추천인 서명

가. 추천인 서명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 후보자 등록의 과정이므로 본 세칙에서 일정한 규칙을 둔다.

나.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이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강의실 유세는 후보자만이 가능하며 선본 소개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내용이 가능하다.

다.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본복장 착용이나 선전전, 선본 공개회합 등은 금지한다.

라. 연서판은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 이름, 선거 본부의 표시, 서명용지(물리학과 선관위에서 작성, 배포한 것)로 구성한다.

마. 서명용지에는 각 연서판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바. 연서판은 후보자 등록 시에 함께 제출한다.

제5조 학생회 및 언론기관의 선거 운동 금지

가. 이과대 학생회와 각 과반 학생회 및 언론출판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언론 단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비방, 선거에 관한 의사 개진을 할 수 없다. 선거에 대한 의사를 개진 하려면 물리과 선관위의 동의하에 한다.

나. 학생회나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본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각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경중에 따라 해당 후보에게 주의 혹은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사항 이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선관위에서 논의한다.

제7장 유세 및 선전

유세는 강의실, 과방 유세만 가능하며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간에만 한다.

<개정 17.09.23>

제8장 투표

제1조 기간 투표기간은 선관위가 결정 및 공고한다.

제2조 투표소 지정 투표소는 신촌 물리학과 선거 투표는 과학관 로비에 투표함 하나, 송도 제1기숙사 지하 트레비앙 앞에 투표함 하나를 두고 진행한다.

제3조 투표소 선전물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사용법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지한다.(단, 이과 대 선관위가 작성한 포스터는 반드시 부착한다.)

제4조 투표자 확인 투표권자에 대한 확인은 물리학과 명부 확인으로 한다. 특정선본의 선거 운동원이 혹은 선거운동원에 의해 타인이 두 번 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후보자를 경고조치하거나 자격을 박탈한다.

제5조 투표절차

가. 투표자는 소정의 증명서(학생증, 도서대출증, 재학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명단 작성 후 투표용지에 확인을 받은 뒤 투표용지를 배부 받는다.

나.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후 투표한다.

다. 투표자는 정해진 기표용기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한다.

제6조 투표용지

가.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제작·승인한 투표용지만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 소속, 학번만이 명시된다.

다. 투표용지에 선본과 후보자의 란은 가로 병렬 배치한다. (각 투표란 사이는 기표용기(볼펜대통)보다 약간 더 넓게 한다.)

제7조 투표함의 봉함 및 보관

가. 선관위원은 투표 종료 후 선관위의 서명으로 봉인한다.

나.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는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8조 투표함 송부 투표가 끝난 직후 지체 없이 투표함을 봉인한 후 선관위와 참관인의 관리 하에 신촌캠퍼스 물리학과 과방으로 옮긴다.

제9조 단일 후보 후보자 등록을 마친 단체가 유일한 경우, 해당 후보의 당선에 대한 찬성/반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제9장 개표

제1조 개표시작, 장소 개표는 투표 종료 익일까지 봉인된 투표함의 도착을 완료하고 선관위의 참석 후 봉인에 이상이 없을 때, 개표하기 시작한다. 장소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시한다.

제2조 무효표 투표자의 의사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효표로 인정된다.(지장은 무효로 처리하고 선에 걸린 것은 비율로 따져 선관위 판단으로 표로 인정한다.)

제10장 선거무효

제1조 재투표

- 가. 선거결과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일 많은 표를 받은 후보들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나. 결선투표는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제2조 재선거

- 가. 투표율이 30%가 넘지 않는 경우
- 나. 단일 후보시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경우

제11장 후보자격의 박탈 및 경고 조치

제1조 후보자격 박탈

- 가.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 나. 선관위의 조치에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 제재조치

- 가.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의 판단으로 주의 혹은 경고 조치한다.
- 나.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선관위 판단에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로 나누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고 주의 3번은 경고 처리한다.
- 다. 주의조치 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주의 조치될 사안이 경고 조치될 수 있다.
- 라. 기타 선거에 위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혹은 경고조치할 수 있다.
- 마. 제재 조치될 수 있는 동일한 사안이 동시에 복수개로,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 1) A사안이 동시에 복수개로 벌어졌을 경우 1일 이내에 벌어진 사안들은 하나의 사안으로 다루어 주의 혹은 경고조치한다.
 - 2) A사안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 이후 또다시 A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재 조치된 A사안과 다른 사안으로 주의 혹은 경고조치한다.
 - 3) A사안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진 이후, 익일 이후 제재조치 전에 있었던 A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조치하지 않는다..

제12장 당선 공고 및 이의 제기

제1조 당선공고 물리학과 선관위는 개표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제2조 이의제기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공고한 날짜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선관위의 해산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고, 제반 선거 실무를 마쳤을 경우, 선관위는 당선을 확정하고 해산한다.

부칙

가. 본 규칙은 물리학과 선거시행세칙안을 바탕으로 후보자 모임에서 결정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나. 후보자 모임에서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학과 선거시행세칙안에 의거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관위가 확정한다.

다. 후보자 모임 개최 이전에는 물리학과 선거시행세칙안이 그 효력을 대신한다.